

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제 안 설 명 서

《 의안번호 제1993호 》

- 안건번호 제1993호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
-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개선 등 혼잡통행료 부과 및 감면 취지에 보다 적합하도록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고,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전국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
 - 우리시가 발부한 맑은서울 스티커 전자태그를 부착한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하여 제공되던 감면 혜택을 전국 제2종 저공해자동차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- 또한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상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일부 경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폐지하여 감면 대상을 정비 하였습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0. 12. 17.

도시교통실장 황보연